

초고령사회에 맞는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해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듣다

- 「의료법 체계 연구회」-보건의료단체 간 간담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8일(목)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 기구인 「의료법 체계 연구회」와 보건의료단체 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의료법은 1962년 제정 당시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나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돌봄의 통합적 제공에 대응하기 어렵고, 보건의료인의 업무의 다양화·전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법 체계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운영 중이다. 연구회는 의료, 간호·요양, 법조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어 의료법의 한계 분석, 해외 사례 검토, 주요 규정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 의료법 체계 개편 방향을 권고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의료법 체계 개편 방향성에 대한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최되었으며,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4개 단체가 참석하여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요양·돌봄 활성화 ▲의료기관 내 의료행위 제한 ▲직역 간 업무범위 등 의료법 체계 선진화 방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고령화에 따른 국민들의 욕구 변화에 맞게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료·돌봄 전반을 다루는 법 체계의 정비가 필수적”이라며, “전문가·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편 방향성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의료법 체계 연구회 개요

담당 부서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한숙 (044-202-2420)
		담당자	서기관	박준형 (044-202-2402)



□ 추진배경

- 현 의료법은 고령화·기술발전 등 시대 변화 반영 곤란
- 법 자체의 한계(의료행위 개념 모호 등)로 현장 갈등 유발·심화도 지적
- ⇒ ‘선진화된 의료·돌봄 체계 구축’ 위해 의료법체계 개편 필요

□ 운영방향

- 각계 전문가 중심 ‘연구회’에서 체계적 논의를 거쳐 개편 방향성 도출

□ 운영방안

- (구성) 의료, 간호·요양, 법조계 전문가 총 9인
 - 위원장 1인, 의료분야 3인, 간호·요양분야 3인, 법조분야 2인
 - * 정부는 간사 역할로 참여(보건의료정책관)
- (목표) 의료법 체계 개편 권고문 도출
- (운영) 참여위원 발제·토론 중심, 필요시 관련 단체 의견수렴* 병행
 - * 별도 간담회 또는 공청회 개최
- (내용) 현황·문제점 분석, 타법제·해외사례 검토, 개선 방향성 도출
 - ▲의료기관 외 의료, ▲의료행위성, 업무 범위 개념과 판단 기제,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주제별 순차 논의
- (일정) '23.9월부터 월 2회 정기 운영 (종료 시점 추후 논의)